사업 개요

1. 사업일반

ㅇ 사 업 명: '새정부 경제정책 패러다임' 홍보영상물 제작

ㅇ 사업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

○ **사업예산** : 금 사천만원정 (₩40,000,000 VAT 포함)

o 제 작: FULL HD, 10분 이내 1편

o 입찰방법 : 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 간 제한 경쟁입찰

※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2 제1항 제1호

2.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

- 경제 현황 및 새정부의 정책기조,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이하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쉽고 재밌는 콘텐츠 필요

3. 사업 세부내용

가. 제작방향

- 현재 국내외 경제 현황, 우리 경제의 과제 및 해결 방안 등 다양한 사례와 정보를 제시함과 동시에 정책기조와 방향 설명
- o 정보, 지식, 오락 등의 특성을 조합해 '스튜디오 + VCR 및 모션그래픽(Ani)'의 1인 진행, 2인 대담 등의 형식으로 제작
-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'어려운 내용→연성 콘텐츠 제작'을 위해 익숙하고 친근한 이미지의 진행자(연예인)*로 구성
 - * 예시 : 정성호, 정상훈, 양세형 등 어려운 정책내용을 재밌게 풀어줄 수 있는 진행자

구 분	내 용	비고
경제 패러다임 전환	양적 성장 → 사람 중심 경제	
국내외 경제 현황	저성장·양극화, 해외 극복 사례, 국내 과제, 해결방안	
새정부 경제정책방향	일자리 중심 경제, 소득주도 성장, 공정 경제, 혁신 성장	

※ 사업의 성격상 연간 신규 발생하는 행정의 수요와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완전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과업의 내용은 협의에 의해 변경·추가될 수 있음

나. 제작진 구성

- 본 과업과 유사한 영상제작 경험이 있는 전문 제작자를 중심으로 연출팀, 작가, 촬영팀, 종편실 등의 스태프 구성
- 효과적인 내용 구성을 위해 촬영 전 충분한 자료 수집, 분석이 필요하며 결과를 토대로 스토리 보드 구성, 이를 위한 전담 작가 1인 이상 배치

다. 납품 및 배포

- o 납품 : 원본(MOV), MP4, WMV, 클린본(MOV) 각 1개
 - ※ 모든 파일은 Full HD로 납품해야 함
- ㅇ 배포 : 온라인(홈페이지, SNS, 유튜브 등)

5. 기타 유의사항

① 제작 및 운영 조건

- ㅇ 모든 영상콘텐츠는 담당자와 협의 하에 제작해야 한다.
- 제작방향(촬영·편집·구성)의 결정은 기획재정부가 한다.
- 제작·운영업체는 제작계획을 사전 제출하고 성실히 운영 해야 한다.
-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영상물을 제공해야 하며 사업 수행시다음사항을 이행하야 한다.
 - 국민들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기획·제작해야 한다.
 - FullHD 고화질 영상으로 촬영·제작해야 한다.
 - ※ 기술수준 부적격 및 불성실을 사유로 기획재정부로부터 3회 이상 인력교체 요구를 받은 때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.
- o 제작·운영업체는 콘텐츠 제작이 무리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인력을 편성해야 한다. (필요시 주말, 공휴일 등)
- 제작된 콘텐츠는 기획재정부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 매체 송출시 필요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.
- 기획재정부는 본 용역 수행 중 투입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사업자 임의로 인력교체는 불가하나,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이 발생시에는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 후 교체해야 한다.

②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

-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. 단,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, 수요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(보안 등)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.
- * 용역계약일반조건(기획재정부 계약예규) 제35조의2 참조
- 오라인 콘텐츠의 제작 및 온라인 홍보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자료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하여 제작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작된 콘텐츠 상에 특정인이나 업체, 물품 등에 대한 비방 또는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, 제작과 관련하여 제3자 에게 불법·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업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.
-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사업보고 및 산출물

- o 제작·운영업체는 사업기간동안 수행한 산출물에 대해 담당자가 워하는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.
- 사업 종료시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모든 자료의 원본 및 산출물 일체를 HDD 등 저장매체로 기획재정부에 제공하고 제안요청서, 제안서, 계약서 등 과업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작·운영업체는 사업진행사항 파악, 점검 등을 위해 기획재정 부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해야 한다.
- 모든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성 실히 반영해야 하며 보고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작업체가

부담하도록 한다.

o 수행한 산출물 중 품질 및 하자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에 대해 사업종료일로부터 12개월간 보증하여야 한다.